

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·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84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1999년 5월 17일
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회

위원장 우종호

1. 수정이유

-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중에서 시장이 위원을 위촉 한다는 내용을 시의원의 인원을 명확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시 시의원 3인이내로 한다는 조문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위원회 구성시 현행 제3조 제3항 제4호중 “시 의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 자”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“시 의원 3인이내”의 조문을 신설(안 제3조 제3항 제1호)

수 정 안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위원회구성) (생략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(생략) 1.총무국장, 사회산업국장, 건설국장 2.육군제1사단 작전참모, 관할기무대장,파주경찰서 보안과장 3.시의원과 민통선북방지 역에 연고자 있는자 중에 서 시장이 위촉하는자 4. <u>신 설</u>	제3조(위원회구성) (생략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(생략) 1.총무국장, 사회산업국장, 건설국장 2.육군제1사단 작전참모, 관할기무대장, 파주경찰서 보안과장 3.시의원과 민통선북방지 역에 연고가 있는자 중에 서 시장이 위촉하는자 4. <u>사랑의 집짓기운동 관계</u> <u>자</u>	제3조(위원회구성) (생략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(생략) 1. <u>시 의원 3인 이내</u> 2. (현행 제1호와 같음)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 4. <u>민통선북방지역에 연고</u> <u>가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</u> <u>위촉하는자</u> 5. (개정안 제4호와 같음)

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·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·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의 각호를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시 의원 3인이내
2. 총무국장, 산회산업국장, 건설국장
3. 육군 제1사단 작전참모, 관할기무부대장, 파주경찰서보안과장
4. 민통선북방지역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자
5. 사랑의 집짓기운동 관계자